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합1004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은영, 황현민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송동수, 조희정

3. 주식회사 C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이상준

변론 종결 2023. 3. 6.

판결 선고 2023. 3.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D 사이에 2021.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2021.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주식회사 C와 D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493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B은 같은 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493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등기소 2021. 11. 12. 접수 제505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의 채무자 D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은행은 D에게, ① 2017. 9. 28.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1,170,000,000원을, ② 2019. 8. 7. 가계일반자금대출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은행의 D에 대한 2021. 12. 31. 기준 대여금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7. 9. 28.	1,170,000,000	17,548,844
2	가계일반자금대출	2019. 8. 7.	29,900,000	464,815
합계	1,199,900,000	18,013,659		
총 합계	1,217,913,659			

2)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① 2018. 9. 28. 중소기업자금대출로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1) 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19. 7. 15. 중소기업자금대출로 6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은행은 2017. 9.

28. E에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으로 미화 3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2017. 10. 31.경에는 대여금액이 미화 800,000달러까지 증액되었으며,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은행의 E에 대한 2021. 12. 31. 기준 대여금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8. 9. 28.	400,000,00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9. 7. 15.	64,000,000
3	수입신용장발행관련대출	2017. 9. 28.	290,267,516
합계	754,267,516		

3) 원고 은행은 2016. 7. 7.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4. 26. 대여금액이 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은행은 2019. 1. 10. F에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과 관련하여 미화 3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은행의 F에 대한 2021. 12. 31. 기준 대여금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2) .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7. 7.	26,290,830
2	수입신용장발행관련대출	2019. 1. 10.	126,087,717
합계	152,378,547		

4) 원고 은행은 2017.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D 소유 1/2 지분) 및 같은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4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담보제공행위

1) D은 2021. 1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의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49350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은 2021. 1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의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49351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D은 2021. 1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의 2021. 11.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1. 11. 12. 접수 제50502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D이 2021. 11. 4. 및 2021. 11. 11.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당시인 2021. 11. 4.경 및 같은 달 11.경 원고 은행은 D에 대하여 적어도 2,106,546,063원(= 대여금채권액 1,199,900,000원 + 연대보증채권액 906,646,06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원고 은행이 제출한 위 채권 관련 자료가 대체적으로 2021.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이 위 기준 시점보다 앞서 있음을 감안하여 각 대출원금만을 합산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1. 11. 4.경 및 같은 달 11.경 무렵 아래와 같이 D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1,587,913,57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4,319,454,063원으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은행을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D은 이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584,198,000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 건물이 E(대표자: D) 소유인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액 중 '지상 건물로 인한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산정된 토지 가격'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은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감정서 기재 감정평가액 3,168,396,000원의 절반인 1,584,198,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으로 본다.
2	경남 합천군 I 전 569m ²	3,715,570
합계	1,587,913,570	

1	원고 은행	대여금	1,199,900,000	
연대보증금	906,646,063			
2	J카드	현금서비스	3,000,000	2021. 10. 21.
3	K은행	지급보증 담보대출	14,874,000	2021. 7. 13.
4	L카드	카드론	15,000,000	2021. 3. 11.
5	M은행	신용대출	45,000,000	2019. 10. 11.
6	N은행	보증채무	60,000,000	2017. 12. 26.
7	신용보증기금	위와 같음	1,500,000,000	2019. 5. 27.
8	O	위와 같음	500,000,000	2018. 12. 12.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와 같음	28,080,000	2016. 12. 1.
10	P	위와 같음	46,954,000	2021. 6. 21.
합계	4,319,454,063			

3)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10. 12.경 이미 존재하였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D의 총 채무액의 변동이 없으며 D의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이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 B에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담보제공을 통하여 신규 자금을 융통하였다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D이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이 대표자로 있는 E, F와 약 7년간 문제없이 물품거래를 해왔고 D 개인의 채무초과 상태는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 F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도 2021. 10. 20. 이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4.경 대표자 개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② 피고 측은 D로부터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기다려 달라. D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E, F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③ E, F는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상황으로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가 대표자 개인의 경제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해당 토지의 1/2 지분으로 그 가액이 1,584,198,000원이고 토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F와 오랜 기간 물품거래를 해왔고 D 개인의 경제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1. 10. 12. F에 물품대금 173,760,000원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4.경 대표자 개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② E, F는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상황으로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가 대표자 개인의 경제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해당 토지의 1/2 지분으로 그 가액이 1,584,198,000원이고 토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소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E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가 아니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기존 근저당권들을 감안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였고 D 개인의 채무초과 상태도 알 수 없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1. 10. 초경 E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상가건물에서 퇴거한 후 2021. 11. 5.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2021. 11. 8.경 E를 상대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그로부터 수일 내인 2021. 11. 11.경 대표자 개인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③ 피고 측은 D로부터 'E 재산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나, 대표자인 자신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E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④ E는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고 당시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상황으로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가 대표자 개인의 경제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해당 토지의 1/2 지분으로 그 가액이 1,584,198,000원이고 토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앞선 2021. 11. 4.자 피고 A,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세현

판사이진아

판사김혜민

별지

산출근기표(갑 제1, 14호증)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 은행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 건물이 E(대표자: D) 소유인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액 중 '지상 건물로 인한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산정된 토지 가격'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은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감정서 기재 감정평가액 3,168,396,000원의 절반인 1,584,198,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으로 본다.

4)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D의 2021. 11. 4. 및 2021. 11. 11. 기준 채무내역은 알기 어려우나, 각 채무내역 조회 시점(2021.11.경 내지 12.경)과 처분행위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각 채무의 발생일자를 고려하면 처분행위 당시 채무내역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